

허 가 조 건

제1조(목적)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의 목적은 『허가서상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업소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시설반환일 기준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납부한 당해 사용허가 재산의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내 개인재산에 대한 보험은 시설 사용자가 개인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업소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시설 내에서의 취사 등 화기취급 행위(단, 식당은 제외)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료 등의 체납으로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2월 전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하에 당해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사업소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이행할 때만 하거나 위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사업소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설물의 관리 등)

1.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시설장비 등 제반사항은 별첨 『반여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다.
2.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시설물은 원형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거나 사업소장의 허가 없이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에 의거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사업소의 허가를 받아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영업과 관련한 부대시설 등을 사용자가 자비로 구입·설치하였을 경우 시 또는 제3자에게 이와 관련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영업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라도 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업소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직접 센텀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주차장 사용) 사용자가 차량을 상주 주차할 경우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조치) 사업소장은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이전에 단전·단수 등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허가조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업소의 결정에 따른다.